

고도의 기술

수행능력이 열쇠



전홍재

(전 로스 프리벤션 소장)

용역업은 기술용역에서부터 최근에는 ××심부름용역센터에 이르기까지 그 용어가 천차만별이고 복잡하게 남용되어 혼돈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혼돈때문에 가질 수 있는 기술용역에 대한 경시풍조 내지는 오류를 극복하고 올바른 이해를 가질 때 비로소 참된 기술용역업, 특히 방재와 관련이 깊은 소방설비 용역업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

1. 근거

기술용역은 국내 기술용역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국내기술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기술용역육성법(법률 제2474호)에 의해 태동되었다.

또한 이 법에서 기술용역을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사업관리, 나아가서 기술적 타당성 검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처리 사업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운전 및 검사”로 정의하고 있다.

2. 용역업의 종류

용역업의 종류는 산업설비용역업, 종합건설기술용역업, 전문기술용역업 및 개인기술용역업으로 대별되며 각 기술부분(23개)별로 업무범위(1백여 종목)가 정하여져 있다.

산업설비용역업은 산업공장, 원자력산업, 종합환경기술부분을 취급하고 종합건설용역업은 항만, 해

안, 국토 및 자연자원 등의 보전·개발을 위한 기술업무를 취급하는데 산업설비용역업과 종합건설기술용역업의 성립요건은 원칙적으로 기술사 10인, 건축사 1인을 포함하여 고급기술자(기술사, 이공계 박사, 이공계 대학 졸업자로 당해 전문분야에 10년 이상 근무자) 90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일정기준의 자산과 시설이 있어야 한다.

전문기술용역업과 개인기술용역업은 기계·금속·전기·화공·건축설비 등 동일의 기술부분을 취급하는데 차이점은 전문기술용역업의 경우, 기계·건축설비 등의 기술부분중 2개 이상의 분야별로 각 1인 이상 또는 1개 전문분야의 해당 기술사 2인 이상과 해당 전문분야 및 관련분야의 기술자의 수가 해당 전문분야(기계·건축설비·화공 등)의 수의 3배 이상의 기술인력을 통상 보유하여야 하고 또한 소정의 자산과 시설이 있어야 한다.

반면에 개인기술용역업은 해당 분야의 기술사 1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하면 개설이 가능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자와 시설이 확보되어 고도의 기술수행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 영업행위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엄격한 감독을 받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소방설비 기술용역업은 전문기술용역업 또는 개인기술용역업의 건축설비부분에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와 함께 자리하고 있다.

3. 현황

용역업의 현황을 소개하기에 앞서 참고로 용역업



의 개설에 요구되는 사항을 알아보면 원하는 용역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용역법에서 정하는 등록기준에 맞춰 과학기술처에 등록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한다. 이러한 등록은 매년 1회 이상 등록신청 기간을 정하여 관보에 공고되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차기 기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실기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소방설비 용역업을 과학기술처에 등록한 업체는 현재 4개소이며 연초를 전후로 1개 업소가 추가 등록할 예정이다.

이들 소방설비기술용역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신축 대형 일반건물 및 공장 플랜트설비의 소방설비 설계·감리와 기작성된 관련 설계도서의 검토가 주가되고 방재(소방)분야에 대한 자문, 기업요청에 의한 방화교육, 방화의식 제고와 방화기술 개선을 위한 논문작성발표 및 자료제공 등 민간 연구소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필요시 주요 관련 정책심의회에도 참여, 전문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며 때로는 대형건물의 소방점검, 사고현장의 검사를 통해 객관성 있는 개선책 제시와 사고원인 규명 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직한 업무방향에도 불구하고 뿌리깊은 기술우대풍토 조성의 미약, 특히 소방설비는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단순한 사고방식과 법규에 의해 어쩔수 없이 설치한다는 의타적 인식도, 게다가 타용역업에 비해 일천한 역사를 가진 소방설비 기술용역업이기에 불안정한 기반속에 관련 소방·

보험인들에게 보다 많고 값싼 방화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고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소방제도의 보호로 대형 신축건물의 설계도서 검토·자문 등으로 겨우 재정유지를 하고 있으나 경기하락추세로 신축 대상물건이 감소하고 있고 소수 대형건물 소유주의 외국 용역회사 선호도로 인한 기본설계의 외국발주, 기준의 미묘한 해석으로 인한 초기 설계참여 실적부진 등이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방설비 기술용역업의 현주소는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다.

4. 전망

경제성장과 더불어 반도체산업 등 새로운 공정의 출현, 가볍고 외장이 수려한, 그러나 화재시 독성을 발하는 건축재와 장식품의 출현, 건물의 대규모화, 지하화 등의 변화로 화재시 복잡다기한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대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과 방재대책수립에는 고도로 전문화된 과학적 방법이 요청된다. 아울러 수입개방 및 외채상환 압력속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수입품의 대체, 수출의 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현실의 등장은 전문가, 나아가 기술용역업의 발달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49조에 $15,000\text{m}^2$ 이상의 건축물을 그 중요성을 인정, 건축설비 또는 냉난방 및 냉동기계 기술사가 해당설비를 설계하도록 되어있어 관련 용역업체가 활성화되었듯이 안전을 위한 고무적인 영향에 발맞춰 소방분야의 제도가 보완된다면 보다 많은 대형건물과 공장에 더욱 완벽하고 안전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국가재산보호와 인명피해감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소방설비용역업의 소득증대가 성취되어 새로운 소방설비용역업체의 많은 등장과 함께 연구하는 소방풍토가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크게는 소방과학의 현대화, 외국소방설진기법의 조기 토착화가 달성되고 작게는 안정속에 번영된 소방설비 기술용역업체로부터 양질의 값싸고 귀한 방화기술서비스를 관련자 모두가 제공받게 될 날도 멀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